

농지처분위임증서

(앞쪽)

아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임자가 농지저당기관으로서 「농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것을 확약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·날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주 소

명 칭

서명 또는 인

수임자

주 소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위 대리인

서명 또는 인

①처분위임 농지의 표시				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 적(㎡)	소 유 자

②매각에 관한 사항				
감 정 평 가			명 도 책 임	매각에 관련된 중 요 사 항
일 자	감정평가액(원)	감정기관		
			[] 매도인 [] 매수인	

첨부서류	1.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.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·임야도등본
담당직원 확인사항	해당 농지의 토지대장

처리절차

※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